

2025년도 중소기업부 소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수출바우처 참여기업 2차 모집공고

[수출 바로 프로그램]

중소벤처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부 수출바우처 참여기업 2차 모집[수출 바로(barrier zero)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0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환경에서 우리 수출 중소기업이 관세장벽 등 무역 애로를 효과적으로 극복하도록 지원

☐ 지원규모 : 290억원 규모

☐ 사업기간 : 2025. 4. 1 ~ 2026. 2. 28(11개월)

☐ 주무부처/운영기관 : 중소기업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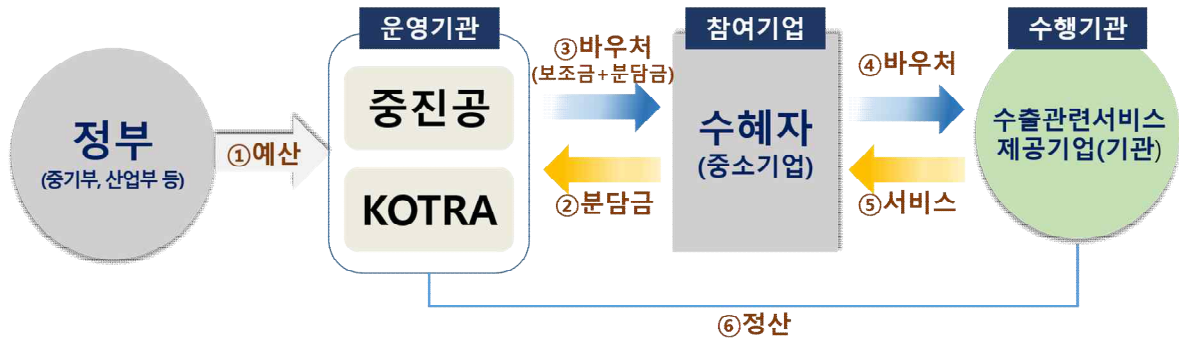
☐ 사업내용

- 관세 피해(예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수출서비스 (관세 컨설팅, 관세 분쟁 해결 지원, 서류대행, 대체공급망 확보 등)를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바우처* 지급

* 바우처 : 시스템에 구축된 메뉴판 내 다양한 수출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가상의 온라인 쿠폰으로, 정부지원금(50~70%)과 기업분담금(50~30%)으로 구성

- 중소기업은 바우처를 활용하여 필요한 메뉴 이용 후 비용 정산

<수출바우처 발급 및 정산 흐름도>



운영기관이 **바우처 총액**(①국고+②기업부담금)을 재원으로 **참여기업**(선정기업)에게 **바우처**(③가상의 쿠폰)를 발급하고, 바우처를 보유한 참여기업은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각종 수출지원 서비스를 온라인 메뉴판에서 비교·선택하여 **수행기관과 계약**(④바우처) 및 수행기관과 **과업 수행**(⑤서비스) 후 운영기관이 수행기관에 **비용을 지급**(⑥정산)

- 관세·법무·회계법인 등 국내외 컨설팅사와 현지 사정에 능통한 해외 현지법인 등을 활용하여, 관세 대응 특화 메뉴를 제공(관세 전용메뉴판, 관세대응패키지)하고, 수출바우처 14대 메뉴와 연계

【 관세 특화 지원 내용 】

지원메뉴		지원내용
관세 특화 (예시)	① 관세 피해 컨설팅	· 미 관세 조치에 따른 관세애로 긴급 해결 컨설팅 - 관세 조치에 따른 법률, 회계, 관세 등 심층자문 - 대응방향 설정 * 신시장 진출을 위한 현지 인증, 세율 등 관련 컨설팅 * 원산지 증명 요구 대응
	② 관세 분쟁 해결 지원	· 현지 법률 전문가 등을 연계하여 부당한 관세 부과 및 분쟁 해결 지원
	③ 관세 분야 서류 대행	· 원산지 증명서, 원산지(포괄) 확인서, 관세환급, 인증신청, 통관절차(함량관세 원가계산 등) 대행
	④ 대체 공급망 확보	· 미국 수출 중단 대비 대체 공급망(신규 바이어) 발굴 연계 - 바이어 추천, 신용조사 등
기존 메뉴	14개 메뉴판	· 조사/일반 컨설팅, 전시회 참여 등 바우처 시스템 활용

- 중소기업 수출에 이해가 높고 해외진출 수행 경험이 많은 산업·무역전문가 등이 참여기업에게 ①현황 및 애로파악, ②해결방안 모색, ③적합한 바우처 메뉴 연계 등을 지원하는 ‘전문가 1:1 코칭’ 운영
- 사업신청서에 희망여부를 선택하면 참여기업 선정 이후 별도 안내
- * ‘전문가 1:1 코칭’ : 참여기업의 필수 이행사항은 아니며 수요에 따라 별도 선발 예정

【 전문가 코칭 지원내용 】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바우처 활용
내용	피해 진단 및 리스크 분석 → 관세영향, 수출손익 등	단기 대응 전략 수립 → 우회전략, 가격 재설정 등	구조적 체질 개선 코칭 → 채널 다변화, 브랜드 가치 강화 등	수출전략 수립 및 이행방안 → 전략수립, 정책연계 등	수출전략에 맞춘 수출바우처 활용

2. 지원요건 및 내용

- 지원대상 :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① 최근 3개년 미국 직접수출 실적 보유 (증빙 제출 불요)
 - ② 최근 3개년 해외생산거점(지점 또는 법인)에서 미국 직접수출 실적 보유 (공고문 6쪽의 신청서류 중 ⑨, ⑩ 필수 제출)
 - ③ 최근 3개년 미국 간접수출 기업 (공고문 6쪽의 신청서류 중 ⑪ 필수 제출)

신청 제외 대상

- ◆ 휴·폐업했거나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경우
-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참여 가능
- ◆ 보조금법 위반 등 부정행위로 인해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기업

- ◆ 각 부처 및 지자체 등이 운영 중인 수출바우처 사업*의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협약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 (중기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산업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농림부) 농식품글로벌 성장패키지, 외식기업해외진출바우처 (해수부) 수산식품기업바우처, (지자체) 경기도 수출기회바우처, 충북 수출창출기업 바우처 지원사업, 광주시 기업맞춤형 수출사다리 지원사업 등 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과 동일한 형태의 사업

- 단, 특정 수출서비스에 국한하여 지원하는 개별사업(지사화사업, OK FTA, 인증취득, 박람회 등)과는 중복신청 가능하나 선정 이후 각 사업간 동일 유사 항목으로 중복정산 금지

- ◆ 최근 2년 산업부·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 참여이력이 있는 기업 중 바우처 협약액 대비 사용률 미흡기업

구분	바우처 사용률	제재사항
'23.4.1일 이후 수출바우처사업 선정기업	70%미만	■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참여제한
	70%이상 ~ 85%미만	■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선정 시 5점 감점
	85%이상	■ 제재 없음

- ◆ 수출바우처 사업 수행기관으로 참여 중이거나 부정행위 등으로 사업 참여 제한 중인 기업과 그 기업의 대표자가 운영하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기업*

* 특수관계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제2조 제 22호 및 23호에 따름

- ◆ 동일 법인의 복수 사업자는 협약기간 내 동시 신청 및 선정 불가

- ◆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 단순 유통기업, 무역상사는 참여 불가

-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

업종 분류	품목코드	수출바우처사업 지원제외 업종
제조업	33402 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 中	도박게임장비 등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46102 中	담배 중개업
	46~47 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중개 및 도 소매업, 사행성, 사치성 상품 중개업 및 도소매업, 주류, 담배 소매업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5621	주점업
정보통신업	58 中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임대업	76390 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24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업종으로 함

□ 지원규모 : 선정기업의 '24년 수출액 규모에 따라 지원금액 차등

수출단계	실적기준	국고지원한도 (백만원)
내수	전년도 수출실적이 없거나, 1,000불 미만 기업	30
초보	전년도 수출액 1,000불~10만불 미만	30
유망	전년도 수출액 10~100만불 미만	45
성장	전년도 수출액 100~500만불 미만	70
강소	전년도 수출액 500만불 이상	100

[수출실적 인정기준 및 증빙서류]

- **수출실적 증빙서류** : 상품(재화) 수출실적은 운영기관에서 조회 예정(무역통계진흥원)으로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단, 기업 희망 시 무역협회 수출실적증명원 제출서류도 인정 가능)
 - * 간접수출 실적은 신속한 선정절차를 위해 수출단계 실적기준에서 제외
- ※ 법인등기부등본상 지점·지사로 등록된 경우, 지점의 수출실적 증명서 제출 시 실적 합산 가능(동일 법인이 아닌 자회사, 계열사는 제외)
 - 지점/지사의 신청 서류상 ⑧ 수출실적증명원 제출 필요

□ 국고보조율 : '24년도 매출액 규모에 따라 국고지원 보조율 차등 적용

- 매출액 100억원 미만(70%), 100~300억원 미만(60%), 300억원 이상(50%)
 - * 단, '24년 결산 미완료 기업(개인기업 등)은 '23년 재무제표 적용

3. 참여기업 신청 방법 및 사업진행 절차

□ 신청방법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온라인 신청

- * 신청시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용 공인인증서 발급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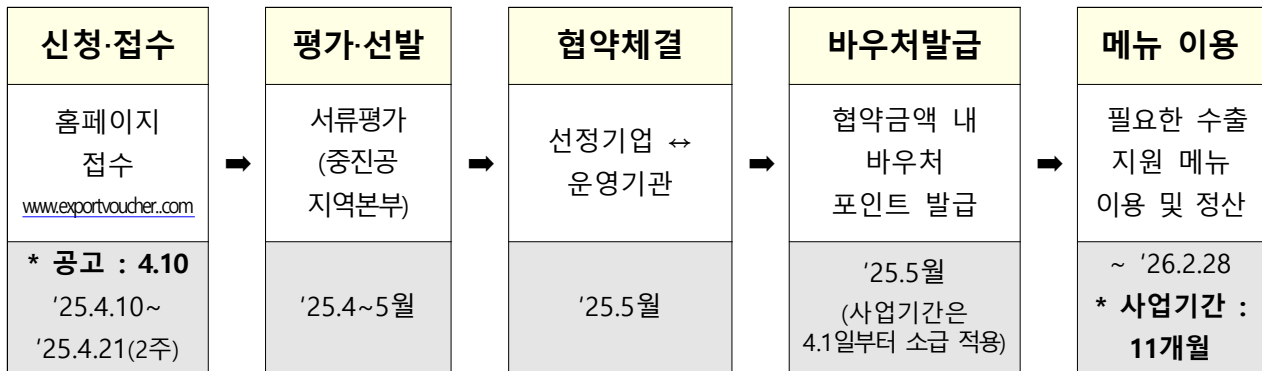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용 공인인증서 안내

- 사업신청 시 범용인증서 및 용도제한인증서(수출바우처 시스템용)만 사용 가능
 - * 개인인증서, 금융결제원 간이인증서,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는 사용 불가
- 범용인증서의 경우 결제일로부터 최소 2일, 용도제한인증서는 최소 3일 소요되며 직접 방문 시 당일 발급 가능(수출바우처 홈페이지 참조)
 - * 인증서 발급기관 :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정보인증, 코스콤

□ 신청기간 : '25. 4. 10(목) ~ '25. 4. 21(월) 17시까지

- * 접수 증가에 따른 신청 지연(불가) 가능성이 있어 신청마감일 이전 신청완료 권장

□ 사업진행 절차



□ 신청서류

구분	연번	서식명	내용
필수	①	사업신청서	홈페이지에서 작성
	②	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 동의서	홈페이지에서 작성
	③	사업계획서	바우처 활용계획 작성
	④	사업자등록증명원	중소기업지원플랫폼 제출
	⑤	'24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단, 개인기업은 '23년	
	⑥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⑦	중소기업확인서 * 신청일 기준 유효서류만 인정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발급
선택 (희망시)	⑧	'24년 수출실적증명원	한국무역협회 발급
	⑨	(해외생산거점 보유기업) 해외법인/지점(생산거점) 증빙서류	① 해외 사업자등록증 또는 지점 등록인증서 등 현지 사업자 등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② 외국환거래은행의 해외직접투자/지사설치 신고필증 해외 현지법인 명세서/재무상황표 중 택1
	⑩	(해외생산거점 보유기업) 해외법인/지사- 미국 수출 증빙서류	생산거점 현지 정부 발행 '22~'24년 수출실적 증명원(미국 수출액 증빙 필수)
	⑪	(간접수출기업) 생산제품의 미국 간접수출 증빙서류	① 간접수출실적증명원(수출실적확인) ② 구매확인서(구매기업표시) ③ 구매기업의 수출계약서, 수출신고필증 * ①,②,③으로 미국 간접수출에 기여함을 증빙하여야 인정 * ①,②은 KNET의 정식발급본에 한하여 인정
	⑫	미국 직접수출 실적 증빙('22~'24년)	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발급

* 운영기관이 요청한 서류 제출을 거부하거나 고의 누락 시 별도 통지 없이 선정 제외 가능

*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발급 2년 이내 서류 중 유효서류만 인정

□ 신청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반드시 숙지 후 제출

- (①~②) 사업신청서, 신용조회·정보제공 동의서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의 온라인 신청시스템 활용(별도 오프라인 신청서 작성 및 첨부 불요)
- (③) 사업계획서: 첨부 "서식 3" 서류 작성 및 날인 후 수출 바우처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 스캔본 첨부
- (④~⑥) 민원증명 서류 : 「중소기업지원플랫폼」을 통해 간편 제출
 - * 중소기업지원플랫폼(www.one-click.co.kr) : 각종 민원증명 서류 발급 및 제출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 ** 사용자 매뉴얼은 수출바우처 온라인 신청시스템에 첨부되어 있으며, 중소기업지원플랫폼을 통한 서류제출이 기한 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
- (⑦) 중소기업확인서 : 사업신청일 기준 유효서류만 인정
- (⑧) 무역협회 수출실적증명원 : 운영기관 조회 결과(무역통계진흥원) 보다 수출 실적이 많을 경우 유리한 실적을 적용할 예정이므로 참여기업 선택에 따라 제출
- (⑨, ⑩) 해외생산거점 증빙서류
 - * 신청 이후 운영기관의 필요 여부에 따라 제출 서류 추가 검증 요청자료 요구 가능
 - * 각 항목별(⑨-①, ②, ⑩) 증빙 서류 제출 필수
 - (⑨-①, 생산거점 증빙) ①해외 사업자등록증, ②해외 지점 등록인증서 등 현지 사업자 등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 (⑨-②, 생산거점 증빙) 외국환 거래법 제 3조 1항에 따라 제출하는 ①외국환 은행 제출용 해외직접투자신고서, 해외지사설치신고서의 외국환 은행제출 확인 서류(신고필증 등), ②해외 현지법인 명세서 / 재무상황표 중 택 1
 - (⑩, 생산거점 - 미국 수출 실적증빙) 생산거점 현지 정부가 발행한 '22~'24년 수출실적증빙 (→ 수출 목적국이 미국임을 증빙 필요)
- (⑪-①, ②, ③) 미국 간접수출 실적 증빙서류(①, ②, ③ 모두 제출시 인정)
 - 간접수출실적증명서, 구매확인서(간접수출실적증명에 활용한 구매확인서, 구매기업 확인), 구매기업의 직수출실적증빙서류(수출계약서, 수출신고필증 등)
- (⑫, 미국 직수출 증빙서류) 운영기관이 무역통계진흥원에 조회할 예정이나 무역협회 발급분으로 별도 인정 희망 시 제출

4. 평가 기준

☐ 평가 절차

- 신속한 관세 피해(우려)기업의 수출 애로 해소를 위해 **현장평가를 생략하고 서류평가만 진행**하는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선발

① 신청기업 대상 **지원요건**(미국 직·간접 수출 여부) 및 **결격사유 확인**

② 지원 가능 규모를 초과하여 접수될 경우, **지역별, 수출단계별 지원규모 결정 후 최근 3년 미국 수출액*** 상위 순서로 선정

* 운영기관이 무역통계진흥원으로부터 확인한 최근 3년('22-'24) 미국 수출실적의 합계

5. 유의사항

- ☐ 중소벤처기업부 수출지원사업 및 지방자치단체,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및 유관기관과 **동일·유사사업 중복지원 불가**(‘25. 4. 1 기준)

* 예시)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원하는 ‘개별 전시회 지원사업’ 참여 후 ‘수출바우처’ 세부프로그램으로 같은 전시회 참여·지원을 중복으로 신청하는 경우 등

- ☐ 동일·유사사업을 활용하여 중복 정산하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 **보조금 환수, 제재부가금(최대 5배) 부과** 및 **정부지원 사업 참여 제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 금번 사업 협약체결 후 참여기업의 사정으로 협약을 **중도 해지**한 경우 **협약 시작일로부터 2년간 수출바우처사업 신청자격 상실**

- ☐ 협약시작일로부터 1개월 내 사업계획서 미제출 및 기업분담금 30%이상 미납 시 **사업포기로 간주하여 사전공지 없이 선정 취소**

- ☐ 중소벤처기업부 수출바우처의 **졸업제*** 적용 제외

* 2023년부터 수출단계별 정부지원금을 합산하여 누적 지원금이 지원한도를 초과할 경우 수출바우처 사업에 참여 제한 중(예시 : 내수단계 60백만원, 유망단계 90백만원 등)

□ 바우처 사용률이 85% 미만일 경우 2년간 사업 참여 제한

바우처 사용률	참여제한
70% 미만	■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
70% 이상 ~ 85% 미만	■ 5점 감점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선정 시)
85% 이상	■ 제한 없음

□ 수출바우처 정산 시 운영기관 보완요구를 10일 (영업일 기준)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산 불가

※ 수출바우처 정산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참여기업 및 수행기관은 '수행완료' 처리 기한을 고려하여 바우처 사용일정에 유의

□ 1개의 법인이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참여기업에 대해서만 바우처 정산 가능 (사업자번호 기준)

* 예시 : 법인 본사로 신청 및 선정 → 본사만 정산 가능,
지점(혹은 공장)으로 신청 및 선정 → 지점(혹은 공장)만 정산 가능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및 「수출지원기반활용 관리지침」, 운영기관별 「수출바우처사업 운영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사업신청 및 선정 후 지침 등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에게 있음

6. 문 의 처

구 분	전 화
수출바우처 일반 문의	055-752-8580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문의	홈페이지 내 '온라인 문의' 이용 * 커뮤니티>문의하기>문의유형 : "시스템" 선택 후 작성
중소기업지원플랫폼	02-3771-1100

7. 수출바우처 메뉴

○ 수출바우처 메뉴판에 15개 분야 8,000여개 서비스 등록

< 수출바우처 서비스 메뉴판 분류 및 내용 예시 >

대분류	정의	내용(예시)
관세대응 (관세대응패키지)	관세피해 대응 관련 서비스	대체시장 발굴, 대체 공급망 확보, 관세 현지 분쟁 해결 등 관세 대응 관련 서비스
조사/일반 컨설팅	정보 조사 및 법무·세무·회계를 제외한 수출관련 일반 컨설팅 지원	해외 진출전략 구축, 해외시장조사, 경쟁사 및 경쟁제품 분석, 소비자 리서치, 해외거래처 조사/발굴/매칭 등
통번역	수출을 위한 기업의 활동에 필요한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지원	계약/법률 문서, 비즈니스/기술문서, 홈페이지 번역 등 통번역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역량강화 교육	수출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제공 및 지원	무역실무, 글로벌마케터 양성, 비즈니스 회화, 전략시장 진출 등 수출 역량강화 교육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특허/지재권	특허·지재권 취득 등 해당 분야 전문 서비스 지원	해외상표, 해외특허 및 실용신안,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등 특허/지재권 관련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서류대행/ 현지등록	수출·무역·현지진출 관련 필요 서류 작성 대행 및 현지 등록, 서비스 지원	계약서 작성, 통관/선적 필요 서류 작성, 결제관련 서류 작성, FTA원산지 관련 서류 작성 등 서류대행/현지등록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홍보/광고	기업/제품/브랜드의 해외 마케팅을 위한 홍보 및 광고 지원	TV·PPL, 신문·잡지 홍보/광고, SNS·검색엔진 마케팅 등 광고 매체를 활용한 홍보/광고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브랜드 개발·관리	수출브랜드의 개발과 관리를 위한 마케팅 지원	수출브랜드 진단/분석, 신규 수출 브랜드 런칭, 마케팅/브랜드 전략, 디지털 마케팅 전략, 제품·개발 개선 전략 및 컨설팅
전시회/행사/ 해외영업지원	수출관련 행사 기획·지원 및 해외 영업지원을 통한 수출 지원	국내개최국제전시회 참가, 현지 바이어 매칭 상담회/세미나/제품시연회 등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해외진출을 위한 법무·세무·회계 관련 전문 컨설팅 지원	회계감사, 세무조사, 법률자문, 해외법인설립, 해외 현지 클레임 해결지원 등 수출목적인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디자인 개발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디자인 개발 지원	외국어 카탈로그 제작, 외국어 포장디자인, 외국어 홈페이지(반응형), GUI, 해외 온라인 쇼핑몰 상품 페이지, 제품디자인, CI 및 BI 개발 등
홍보 동영상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홍보 동영상 개발 지원	외국어 홍보 동영상 제작 등
해외규격인증	해외규격인증 취득을 위한 시험·심사·인증 및 인증 대행 컨설팅 등 해당 분야 전문 서비스지원	해외인증비용 사후정산, 위생, 할랄 등 해외 인증 취득 및 등록 등 해외규격인증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국제운송	수출자가 부담하는 국제운송비	수출자가 부담하는 국제운송료 및 보험료 (국내운임, 취급수수료, 도착국 발생비용, 세금성 경비는 제외)
무역보험· 보증	수출관련 보험·보증서비스	수출신용보증(선적전), 단기수출보험, 환변동보험, 국외기업 신용조사, 해외채권 회수대행 서비스

1. 지원항목은 기업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선정된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에 따라서 실제 지원항목은 변경 가능
2. 간접성 경비(소모성비품 구입비 등) 및 부가가치세는 정산 불가하며, 중소벤처기업부 정산가이드 및 분야별 총괄수행기관이 고지하는 서비스별 표준단가 내에서 정산 가능

(신청기업 참고용으로, 스캔본 업로드 불필요)

기업 현황	기업명				대표자				
	대표자 휴대전화				대표자 이메일				
	설립일자				법인등록번호				
	업종		제조업 / 비제조업		생산 품목				
	(본사)전화번호				(본사)팩스번호				
	(공장)전화번호				지역				
	구분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본 점								
	공 장								
	지점(1) (해외 포함)								
	지점(2) (해외 포함)								
	담당자/직위				연락처				
	휴대전화				이메일				
	최근 3개 년도			'22년		'23년		'24년	
		매출액(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수출액 (달러)	직접	달러		달러		달러	
			간접	달러		달러		달러	
			합계	달러		달러		달러	
종업원수(명)		명		명		명			
수출입력		년	사업참여이력	신규(), 재신청()회 (참여년도:)					
주요 인력 운영			없음	있음	부서명		인원		
	해외마케팅·영업 인력								
	연구개발인력								
수출 현황 및 목표	수출품목 및 서비스		현재						
			계획						
	주요수출국가 (3개국 이내)		현재						
			계획						
	목표금액(달러)								
	수출애로현황 (구체성 및 시급성)		미국 관세 조치로 인해 이미 발생하였거나, 연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출 애로를 구체적으로 작성						
해외현지법인/지사여부		공고상 지원요건 중 ② 현지생산거점(미국으로 수출실적 보유) 해당 시 작성							
전문가 코칭 희망여부		☐ 희망, ☐ 미희망 (* 희망 분야는 선정 이 후 별도 안내)							
당사는 중소기업부가 추진하는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이사 : (직인)									

[서식 2 - 신용정보 조회 및 정보활용 동의서] - 온라인 동의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중진공')·kotra 귀중

본인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수출바우처)과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과 같이 중기부·중진공·kotra와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를 위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 이력 정보로 활용, 고객만족도 조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수집·이용할 항목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연락처(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사업 신청 이전 및 이후 기업(신용거래)정보(대출, 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 신용카드, 할부금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정보),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기업현황, 대표자 및 경영진 현황, 영업상황(매출현황, 최근영업상황), 재무상황(재무제표 등), 고용에 관한 내역(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등),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목적국, HS코드, 수출액, 국가별 수출액, 운송방법, 거래구분, 화주, 수리일, 품목명, 수출신고번호), 간접수출에 관한 거래내역(공급기업, 공급액, HS코드, 품목명, 문서번호, 발급일), 기타 신용정보(국세 등 체납정보, 사회보험료 관련 정보,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기업(신용)정보 및 관련된 기업(신용)정보, 세금계산서 발급,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및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과세정보(단, 활용정보는 매출액,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 수출액에 한함)
보유·이용 기간	기업(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기업 정보는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수집),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와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며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를 위하여 제출한 서류일체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인 경우에는 지원결정 취소, 보조금 상환, 참여 제한 등 제재나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기업(신용)정보의 조회에 관한 사항

조회대상 기관	▶ 신용조회회사 : 한국기업데이터(주), NICE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등 ▶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여신금융협회, 전국은행연합회 등 ▶ 금융회사(국민, 기업은행 등) ▶ 중소기업 관계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 지자체 등), 중소기업진흥기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수출입은행,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KTNET ▶중진공과의 용역 계약 후 지원사업을 위탁받은 민간 수행사 등
조회 목적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신용정보 조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 이력 정보로 활용
조회할 기업(신용)정보	▶ 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금융회사 등에 조회하고자 하는 귀하의 기업(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설립연월일 등),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 · 신용거래 정보(대출, 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 신용카드, 할부금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정보 등) ·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기타 신용등급, 타 기관의 신용조회 기록 등 ▶ 중소기업 관계기관,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KTNET, 산업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수행사 등에 조회하고자 하는 기업(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설립연월일 등),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 · 기업등록관련 정보(설립, 주식 등 정보), 투자, 정책 지원내역, 영업상황(판매실적, 주요구매처 등), 재무상황(재무제표 등) 등 · 고용에 관한 내역(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등) ·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목적국, HS 코드, 수출액, 국가별 수출액, 운송방법, 거래구분, 화주, 수리일, 품목명, 수출신고번호), 간접수출에 관한 거래내역(공급기업, 공급액, HS코드, 품목명, 문서번호, 발급일) ▶ 위 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조회대상기관에게 제공되는 귀하의 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식별정보 : 법인의 명칭, 상호,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귀하가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신청한 계약의 목적 달성 때까지 동의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귀하가 신청한 계약이 중진공·kotra 또는 귀하의 의사에 의하여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와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기업(신용)정보 조회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3. 기업(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 신용조회회사 : 한국기업데이터(주), NICE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등 ▶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여신금융협회, 전국은행연합회 등 ▶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 중소기업 관계기관,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중진공과 대출 등 정보 제공 온라인 연계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기업, 수협, 전북, 대구, 우리, 부산, 경남, 제주, 광주, SC, 씨티, 농협, 국민, 신한, 하나, 외환, 수출입, 산업은행 등), KTNET ▶ 중진공과의 용역 계약 후 지원사업을 위탁받은 민간 수행사 등
제공받는 자의 목적	▶ 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보증기관 : (금융) 거래의 설정, 유지, 이행, 관리 등에 필요한 업무의 수행,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 수출입은행,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KTNET :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 중소기업 관계기관,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및 수행사 등 :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 연계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의 수행 ▶ 중진공과 대출 등 정보 제공 온라인 연계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기업, 수협, 전북, 대구, 우리, 부산, 경남, 제주, 광주, SC, 씨티, 농협, 국민, 신한, 하나, 외환, 수출입, 산업은행 등) : (금융) 거래의 설정, 유지, 이행, 관리 등에 필요한 업무의 수행
제공할 기업(신용)정보의 항목	▶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조회회사, 보증기관 등에 제공되는 기업(신용)정보의 항목 ·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연락처(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기업현황, 대표자 및 경영진 현황, 영업상황(매출 현황, 최근영업상황), 재무상황(재무제표 등), 고용에 관한 내역(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등), 수출에 관한 거래 내역(목적국, 수출액, 국가별수출액, HS코드, 품목명 등), 간접수출에 관한 거래내역(공급기업, 공급액, HS코드, 품목명, 문서번호, 발급일) · 신용거래 정보(대출, 담보제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정보),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 기타 신용정보(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사업관리 등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정보 등, 기타 거래의 설정·유지·이행, 관리를 위한 상담, 사업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등 ▶ 수출입은행,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KTNET :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을 판단하기 위한 식별정보, 대출정보 등 자료 ▶ 중소기업 관계기관,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및 수행사 : 식별정보, 신용능력정보(기업현황, 사업장 및 가동현황, 신용거래정보, 영업상황, 재무상황 등), 신용거래정보(대출 등 지원현황 등), 고용정보 등 ▶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 등 :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등), 신용거래 정보(대출, 보증, 담보제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정보),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소득의 총액 등) 등
제공받는 자의 기업(신용)정보 보유·이용 기간	제공된 날로부터 제공된 목적을 달성한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목적과 관련된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와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기업(신용)정보 제공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4. 공공기관 등 보유 신용정보 제공·조치에 관한 사항

제공·조치 대상기관	▶ 국가기관(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국세청,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등),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은행법에서 정한 은행
제공·조치 목적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련 조사, 평가, 정책자료 및 사후관리에 이용
제공·조치 정보의 항목	▶ 식별정보 : 법인의 명칭, 상호,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 고용에 관한 내역(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등) ▶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목적국, 수출액, 국가별 수출액, HS코드, 품목명 등), 간접수출에 관한 거래내역(공급기업, 공급액, HS코드, 품목명, 문서번호, 발급일) ▶ 재무상황(재무제표 등) ▶ 과세 및 납세정보(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납세증명서 등), 정책지원내역 등
제공·조치 정보 보유·이용 기간	기업(신용)정보는 제공(조치)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조치)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되며,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목적과 관련된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와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신용정보 제공·조치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신용정보를 중진공·kotra에 제공하여, 중기부·중진공·kotra가 조회하는 것에 동의하며 지원업체로 결정될 경우 당사의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지원결정일, 지원사업명, 지원금액 등)를 중진공 홈페이지와 통합정보시스템 및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해외마케팅 전담인력 채용 알선을 제공받기 위해 무역협회 일자리센터에 공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신청과 관련하여 중진공이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공장설립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당사의 정보(공장등록증, 공장설립 등 승인서)를 열람·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권한부여에 대한 동의여부	중기부·중진공·kotra가 본인을 대리하여 대상기관인 국가기관 등에 위와 같이 본인의 신용 정보를 제공 요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5. KNET 무역정보 활용·제공 동의

제공 · 조회 목적	▶ 무역관련 금융·보증·보험기관 이용시 거래지원 및 편의제공 ▶ 국내외 바이어 발굴/매칭 등 거래선 확대 지원 ▶ 중소기업지원 등 공공기관의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 제공 ▶ 무역사기 방지를 위한 공정 무역환경 조성 등
무역정보 활용 · 제공 항목	▶ 업체별 취급품목 or 품목별 업체정보 * 취급품목(품목분류번호, 품명), 업체정보(상호, 사업자번호, 주소) ▶ 업체별 직·간접 수출입 실적을 기간별로 누적한 통계 ▶ 기타 제공목적에 부합하는 전자무역문서 항목별 정보
제공 · 조회 정보 보유·이용 기간	KNET 전자무역 서비스 이용기간
제공받는 자	▶ 무역관련 금융·보증·보험기관(ex. 은행, 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 무역진흥기관 : 무역관련 행정기관, 무역협회, 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무역관련 유관기관 ▶ 국내외 바이어(품목별 업체정보에 한함) ▶ 공공/민간 연구기관, 신용평가기관 및 기타 상기 무역정보 제공목적에 부합하는 자
기업(신용)정보 제공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기업체명		대표자	(인)
법인등록번호	-	연락처	() -
사업자등록번호			

※ 본인은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귀사(귀하)의 신용조회사실이 귀사(귀하)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금융)거래 종료일이란 중기부·중진공·지방청·kotra와 거래 중인 모든 계약 및 서비스가 해지 등 종료된 날을 의미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중진공')·kotra 귀중

본인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수출바우처) 및 연계지원과 관련하여 중기부·중진공·kotra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제24조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중기부·중진공·kotra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목적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및 연계지원 등을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 이력 정보로 활용, 고객만족도 조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수집·이용항목	개인정보(성명, 휴대폰번호, 전자우편주소)와 지원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평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개인정보(성명, 휴대폰번호, 전자우편주소)
보유·이용 기간	위 개인정보는 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 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분쟁 해결, 민원 처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 불이익	▶ 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일부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 중기부, 중진공, kotra 등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지자체, 지역혁신기관) ▶ 중진공과의 용역 계약 후 지원사업을 위탁받은 민간 수행사 등
제공받는 자의 목적	▶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을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고객만족도 조사, 청렴도 조사, 관련 중진공 주관 사업 안내,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제공할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성명, 휴대폰번호, 전자우편주소)와 지원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평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개인정보(성명, 휴대폰번호, 전자우편주소)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 기간	제공된 날로부터 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 기재된 이용목적과 관련된 상품거래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위와 같이 사업진행에 필요한 기업신용정보 및 개인정보 조회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명 : (자필성명 또는 개인인감)
담당자명 : (자필성명 또는 개인인감)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수집·이용목적

- ① 중소기업정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
- ②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만족도 조사)

☐ 수집·이용항목

-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른 기업 소재지, 업종,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개업일·휴업일·폐업일,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 일반연구·인력개발비,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신용카드 결제금액, 신고한 수출 물품의 품명, 품목 번호, 총 신고가격, 목적지, 신고일
- ②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목적의 지원이력 정보(전화번호, 이메일 등)

☐ 수집·이용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 등),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수집·이용기간

-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 기준 이전 3개년부터 사업 참여 이후 5년까지

☐ 파기대상 정보

- 국세청 및 관세청 과세정보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전화번호, 이메일 등

☐ 파기절차 및 방법

- 파기 계획을 수립하여, 수집 및 이용기간 경과 시 30일 이내 지체 없이 파기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 본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귀하는 기업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사업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 ○ ○
대표자 ○ ○ ○ (인)

수출바우처사업 사업계획서

☐ 수출마케팅 추진 계획

기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연 락 처		
이 메 일				정부 지원비율		
	분야	프로그램	추진기간	정부보조금(A) (단위: 천원)	기업부담금(B) (단위: 천원)	바우처발급액 (비율, A+B)
1	관세 관련		~			
2			~			
3			~			
4			~			
소 계		-				
1	일반					
2						
3						
4						
소 계		-				
합 계				천원	천원	천원

상기 수출마케팅계획은 기업 자체판단에 의해 수립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참여기업 :

대표자 : (직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귀하